

수원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61928(본소), 2020나61911(반소) 판결

[공사대금 · 손해배상금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이보라, 오진아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정

담당변호사 유택근

변 론 종 결 2021. 4. 15.

판 결 선 고 2021. 5. 13.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2. 19. 선고 2018가단52870(본소),

2018가단65241(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4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항소취지주문 제1, 2항과 같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10,4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3. 피고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4,0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7행부터 3면 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D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6,490만 원(추가공사대금 550만 원 포함)과 음성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4,290만 원(추가공사대금 330만 원 포함)의 합계 1억 780만 원에서, 울산 C 공사 및 음성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비 합계 78,366,000원(= 울산 C 공사 하자보수비 54,653,000원 + 음성 공사 하자보수비 23,713,000원)을 상계한 나머지 29,43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울산 D 공사의 AC TANK 및 활성탄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울산 D 공사계약의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이는 피고가 설계제작설치하였으므로, 그 부분의 하자보수비는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

원고는 음성 공사의 추가공사를 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1억 450만 원(= 울산 D 공사 6,490만 원 + 음성 공사 3,960만 원)이다.

그런데 위 각 공사 현장에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110,906,000원(= 울산 C 공사 부분 54,653,000원 + 울산 D 공사 부분 32,540,000원 + 음성 공사 부분 23,713,000원)에 부가가치세(10%)를 더한 금액인 121,99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의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7,496,000원(= 121,996,000원 - 1억 4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으로부터 울산 D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비 중 7,00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10,489,000원(= 17,496,000원 - 7,00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울산 D 공사에 관하여 64,900,000원, 음성 공사에 관하여 39,600,000원의 각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8, 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음성 공사에 관하여 피고와의 합의하에 추가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공사비가 330만 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1, 16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가 2017. 5. 8. 피고 대표이사 J에게 ‘E CONTROL 자동화 견적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는데, 위 이메일에는 음성 공사 중 CONTROL 자동화 변경 작업 건에 관한 3,097,6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다.

② 원고는 2017. 5. 19. 다시 J에게 ‘E-전기추가공사 견적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는데, 위 이메일에는 ‘E-CONTROL 자동화’ 작업 건에 관한 4,7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다.

③ 원고는 2017. 9. 14. 다시 J에게 ‘귀사와의 공사계약과 관련한 미수금 내역서를 송부하니 미지급된 금액을 재확인하여 속히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위 이메일에 첨부된 미수금 현황 표에는 ‘E 전기추가금 합계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는 2017. 10. 31. 피고에게 ‘E 추가공사’에 대하여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⑤ 위와 같이 원고가 보낸 이메일이나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피고가 추가공사 사실을 부인하는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⑥ 원고의 현장소장 F도 제1심 법정에서 ‘음성 공사 당시 E 담당자가 전기 컨트롤러 조작과 관련하여 메인운전실에서 조작이 가능하게 컨트롤시스템 변경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K에 의뢰하여 추가작업을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⑦ K의 G도 제1심 법정에서 ‘음성 공사 당시 E 담당자가 메인운전실에서 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컨트롤 시스템 변경을 요구하였고, 최초로 견적 471만 원을 제시하였는데, 피고가 금액이 비싸다며 PLC 부분을 빼고 타이머로 변경하라고 하여 부가세 별도로 견적 300만 원을 제시하여 피고의 승낙을 받고 제가 설치 공사를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 780만 원(= 울산 D 공사 6,490만 원 + 음성 공사 4,2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판단

1) 울산 C 공사 및 음성 공사에 관하여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울산 C 공사에 합계 54,653,000원의 하자보수비가, 음성 공사에 합계 23,713,000원의 하자보수비가 소요된다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울산 D 공사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가 울산 D 공사로 설치할 전기집진시설의 일부인 AC TANK의 제작도면을 견적서와 함께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가 원고가 교부한 위 제작도면을 제3의 업체(L)에 교부하여 AC TANK를 제작설치한 사실, 위 제작도면의 AC TANK 부분은 탱크 내부에 활성탄 장착 시 냉각을 위한 장치나 내부 공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설계되었고, 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 증인 F의 증언,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갑 제2, 12, 1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의 인정사실 및 피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울산 D 공사계약에 위 AC TANK의 설계 또는 제작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제공한 제작도면을 이용하여 피고가 제작설치한 AC TANK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해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나아가 설령 울산 D 공사계약에 AC TANK의 설계가 포함되어 있었고, AC TANK의 하자로 인하여 소요되는 하자보수비가 32,54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갑 제21, 22호증, 을 제3, 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안산세무서장, 잠실세무서장에 대한 각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AC TANK 하자과 관련하여 발주처인 I로부터 위 하자보수비 금액을 초과하는 하자보수 관련 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위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2016. 5. 6. 작성된 울산 D 공사 계약서(갑 제2호증) 제9조 1)의 라.항은 ‘활성탄 집진기 2기/휀제작설치는 피고가 실시하되 설치 시 원고가 협조하고 협력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② 위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견적서에는 ‘활성탄 공급 제외’, ‘AC TANK 제작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다.

③ 위 견적서에 포함된 상세 내역서에도 ‘AC HOUSING’ 부분 전체에 엑스(x) 표시가 되어 있다.

④ 원고는 울산 D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AC TANK 설계와 관련된 비용을 전혀 요구한 바 없고, 피고도 원고에게 이와 관련된 아무런 비용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는 AC TANK에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도 이 사건 소송 전까지 원고에게 설계 하자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는 화재 이후 원고에게 AC TANK 개조비용에 대한 견적서 송부를 요청하여 원고가 이를 송부하기도 하였다.

⑥ 제1심 증인 F과 제1심 감정인 H은 ‘원고가 AC TANK 설계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제작도면을 기초로 AC TANK가 제작되었다는 의미일 뿐, AC TANK 설계 업무가 울산 D 공사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한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⑦ AC TANK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가 정한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는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가 정한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위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아니고, 오히려 피고가 환경전문공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발주처인 D에 제출하는 설계도면의 ‘설계 책임자’란에도 피고 대표이사 J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피고가 위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그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도급인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등 참조),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위 하자보수는 피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위 법리에 비추어, 위 하자보수비 중 이미 지출된 것이 아니라 향후 지출 예정에 있는 비용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한편, 원고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78,366,000원(= 울산 C 공사 부분 54,653,000원 + 음성 공사 부분 23,71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피고가 2018. 7. 12.자 준비서면으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준비서면이 2018. 7. 1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107,800,000원과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78,366,000원은 대등액에서 소멸하여, 결국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원고의 공사대금채권만 29,434,000원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9,4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8.

3. 13.부터 원고의 2020. 1.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20. 1.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세윤, 판사 정세진, 판사 김지영